◎ 금융위원회공고 제2015-280호

「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「법령 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정안」을 공고합니다.

> 2015년 11월 4일 금융위원회

「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정안」 규정변경예고

1. 개정이유

「비조치의견서 내실화 방안」('15.9.30)의 후속조치로서, 신청인 범위 확대, 공동 신청 제도 및 조건부 답변 도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에 반영하여 금융당국과 금융회사등의 소통창구로서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의 역할을 강화하고, 신청인의 편의성과 제도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신청인 범위 확대(안 제2조)

- 금융회사 및 금융 유관기관으로 한정되어 있던 법령해석·비조 치의견서 신청 자격을 금융이용자(금융회사 외의 자로서 법령등에 따른 제재 등 조치 가능성이 있는 자 또는 금융과 관련된 영업을 준 비하고 있는 자)로 확대함

- 나. 금융협회 등을 통한 신청 가능성 명시(안 제5조제2항)
 - 금융 유관기관 중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금융회사를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사업자단체는 그 회원을 대신하여서도 요청할 수 있도록 함
- 다. 신청서 양식 통합(안 제5조제3항)
 - 신청인의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법령해석·비조치의견서 통합 양 식서를 마련함
- 라. 공동신청 제도 도입(안 제5조의2)
 - 다수 신청인이 공동으로 법령해석 또는 비조치의견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, 대표자를 선정하는 경우 대표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통지는 공동신청인 모두에게 효력이 있도록 함
- 마. 조건부답변 도입(안 제6조의2)
 -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제재 등 조치를 면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금융당국이 신청인에게 요건 충족을 조건으로 제재 등 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조건부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함

3. 의견제출

동 규정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(참조: 규제개혁법 무담당관)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(www.fsc.go.kr / 법령정보 / 입법예고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

(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) 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 다. 보내실 곳: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(100-74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)

o 전 화 : 02-2156-9621

o 팩 스: 02-2156-9619

o 이메일: miras@korea.kr